

협력사 신규 등록 및 운용 가이드라인

2025 년 4 월 1 일

DYCO DY DEOKYANG

디와이덕양(주) 하도급가이드라인	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	제(개)정차수 : 2 재(개)정일자 : 2025. 4. 1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목 차

1. 목 적
2. 가이드라인의 구성
3. 용어의 정의
4.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5.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
 - 5.1 등록신청
 - 5.2 업체평가
 - 5.3 평가결과 종합
 - 5.4 등록품의 및 승인
 - 5.5 등록실시
 - 5.6 거래개시 통보
6.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
7. 거래등록업체의 계약의 해제 · 해지

개정 이력	차수	제(개)정일	게시일	주 요 내 용
	1	2014.7.4	2014.7.7	신규 제정
2	2025.4.1	2025.4.4	사명 변경 (덕양산업(주) → 디와이덕양(주))	

디와이덕양(주) 하도급가이드라인	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	제(개)정차수 : 2 재(개)정일자 : 2025. 4. 1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목 적

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당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가이드라인의 구성

- 1)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사항
- 2) 협력사의 변경사항 수정 등록 관련사항
- 3) 협력사와의 거래정지 관련사항

3. 용어의 정의

- 1) 가이드라인 상의 "협력사"의 범위
 - (1) 부품개발업체 : 부품개발업무 표준에 의하여 일반 자동차부품 개발 및 공급을 하며, 당사 1차부품업체로서 인정되는 업체
 - (2) 일반구매업체 :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액상의 원,부자재 및 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
- 2) "구매승인업체(AVL)"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협력사 그룹을 의미한다.

4.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
- 1)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당사에서 운영하는 전자포탈 DAGS 에 본 가이드라인을 상시 공개한다.
- 2)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당사에서 운영하는 전자포탈 DAGS 에 변경 후 7 일 이내에 수정 등재한다.
- 3)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개별 통지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.

5. 협력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

디와이덕양(주) 하도급가이드라인	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	제(개)정차수 : 2 재(개)정일자 : 2025. 4. 1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5.1 등록신청

신규 등록 희망업체는 부품구매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

- 1) 신규등록 신청서 (해당 부품구매팀으로부터 양식 수령 후 작성)
- 2) 업체실태조사서 (해당 부품구매팀으로부터 양식 수령 후 작성)
- 3) 재무제표(등록신청일 직전 년도의 공인기관의 공인을 필한 것)
 단, 신설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투자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5.2 업체평가

1) 평가기준

- ① 품질경영체제 평가 : 90 점 만점
 - a. 승인도 부품
 - 설계능력(10 점), 개발능력(15 점), 품질(25 점), 납기(15 점), 가격(25 점)
 - b. 미승인도 부품
 - 개발능력(15 점), 품질(30 점), 납기(20 점), 가격(25 점)
- ② 재무건전성: 10 점 만점

5.3 평가 결과 종합

해당 부품구매팀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.

5.4 등록 품의 및 승인

해당 부품구매팀장은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,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하며, 등록 요청 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①업체평가보고서 ②업체실태조사서 ③기본계약서 ④품질보증협약서
- ⑤크레임보상협정서 ⑥보수용 자재공급 협정서 ⑦ 윤리행동규범 준수 협약서

5.5 등록실시

부품구매팀장은 등록승인이 완료되면 AVL 등록업무를 추진한다.

디와이덕양(주) 하도급가이드라인	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	제(개)정차수 : 2 재(개)정일자 : 2025. 4. 1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5.6 거래 개시 통보

부품구매팀장은

- 1) 등록업체의 신규 CODE 가 부여되면 15 일 이내에 등록업체와의 거래 개시 내용을 협력업체, 업무관련팀(자재, 품질, 원가 등)으로 서면으로 (전자문서 포함) 통보한다.
- 2) IT 팀에 해당업체 DAGS 개통을 의뢰한다.

6.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

- 1) 당사의 협력사는 상호 변경, 대표자 변경,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부품구매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
- 2) 단, 대표자변동시 상속, 단순 대표권 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, 제 3 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 시는 당사와의 지속 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부품구매팀으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.
 -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

7. 거래등록업체의 계약해제 · 해지

- 1) 계약의 해제·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‘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’와 ‘최고가 필요한 경우’를 구분하되 해제 ·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.
- 2)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-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,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상대방이 부도,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, 파산,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 - 상대방이 해산,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,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

디와이덕양(주) 하도급가이드라인	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	제(개)정차수 : 2 재(개)정일자 : 2025. 4. 1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3)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/해지할 수 있다.

-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, 납품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납품업체의 기술,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